

해 외 출 장 계 획 서

출 장 명: 라오스 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성과관리 체계 고도화
연구과제명: 2025 국제농업협력(ODA) 성과관리

1. 출장 목적

□ 라오스 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2024-2028)' 성과관리 체계 고도화를 위한
현지 조사 및 기초선조사 실시

- 본 출장은 라오스 내 댐 안전관리 체계의 법제화 기반 마련, 댐 안전 전담 조직 신설 지원, 모니터링 운영·관리 인원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라오스 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의 성과관리 체계 고도화 및 실증적 성과측정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해, 전담 인력 대상 역량 기초선조사(Baseline Assessment)와 정밀안전진단 대상 댐 현장 조사를 병행 수행하고자 함.
- 특히 향후 3년간 연 40일 규모로 실시 예정인 '정밀안전진단 및 모니터링 관련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교육대상자 사전 평가(시험) 및 심층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고, 대표 성과지표 측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함. 이를 통해 사전·사후 비교가 가능한 성과 측정 구조를 설계하고, 교육 효과의 정량·정성 분석 기반을 마련할 계획임.
- 또한 정밀안전진단 대상 8개 댐 중 최대 2개소를 방문하여, ① 현장 여건, ② 운영·관리 실태, ③모니터링 환경 등을 직접 점검함으로써, 설정된 성과지표의 현실 적합성 및 측정 가능성을 검증하고자 함.
- 아울러 농림부 산하 관개국(DOI) 및 한국농어촌공사(KRC) 라오스 사무소와의 협의를 통해 ▲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대상자 현황, ▲ 향후 조직 운영 방향, ▲ 기초선조사 협조 체계를 논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성과관리 체계 구축 방향 논의

- 농림부 관개국(DOI) 및 한국농어촌공사(KRC) 라오스 사무소 면담을 통해 댐 안전관리 전담조직 교육대상자 현황 및 인력 구성 체계 파악
- 성과관리 체계 고도화 방향 공유 및 기초선조사 추진을 위한 협조 체계 구축
- 댐 안전관리 전담조직 신설 및 운영 계획, 향후 교육 대상 인력 구성 방향에 대한 라오스 측 의견 수렴

2) 전담조직 인력 대상 역량 기초선조사(Baseline Assesement) 수행

- 정밀안전진단 및 모니터링 관련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전평가 시험 실시
- 교육 대상 예정자 심층 인터뷰를 통한 역량 수준 정성 진단
- 사전·사후 비교를 위한 역량 측정 지표 구조 검증 및 평가체계 설계 보완

3) 1차 정밀안전진단 대상 댐 현장 조사 및 운영·관리 실태 확인

- 대상 댐 4개소 방문을 통한 현장 여건, 접근성, 관리 주체, 운영 실태 확인
- 안전관리 체계 현장 적용 가능성 및 성과관리 지표 현실 적합성 검증
- 비교 분석을 위한 댐별 관리 수준, 위험 요인, 제약 조건 등 기초자료 수집

3. 출장 기간 및 출장자, 출장지

소 속	출장자	출장지	출장 기간
국제농업개발 협력센터	이윤정 부연구위원	라오스(라등급)	2026.3.15.~2026.3.22. (총 6박 7일, 여비 6박 7일 산정)
	김로아 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인재교육원	박정현 교수		2026.3.18.~2026.3.22. (총 3박 4일, 여비 3박 4일 산정)

□ 이윤정 부연구위원

- **(필요성)** “라오스 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2024-2028)’은 제도 구축, 정밀안전진단, 모니터링 체계 도입, 전담조직 역량 강화 등 복합적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사업으로, 성과관리 체계 설계가 사업의 실질적 성과 창출과 직결됨.
- 특히 본 출장은 전담조직 인력 대상 기초선조사 수행과 성과관리 체계 고도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바, 사업 전반의 성과지표 구조(PDM·PMF)와 현장 적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조정할 수 있는 총괄 책임자의 현지 참여가 필요함.
- 이에 따라 사업 성과관리 책임자인 이윤정 부연구위원의 참여를 통해, 성과관리 체계의 방향 설정 및 지표 정합성 확보를 추진하고자 함.
- **(역할)** 본 출장에서는 사업 전반의 성과관리 체계(PDM·PMF)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현지 여건을 반영한 개편 방향을 총괄적으로 검토할 예정임. 또한 전담조직 인력 대상 역량 기초선조사 구조를 검토하여 지표 설정 기준을 확정하고, 향후 3개년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사전·사후 비교가 가능하도록 평가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아울러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성과관리 체계 고도화 방향을 조율하고, 사업 성과가 제도·교육·운영 개선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총괄 자문 역할을 수행할 계획임.

□ 김로아 위촉연구원

- **(필요성)** 본 사업의 성과관리 실무 담당자로서, 전담조직 인력 대상 기초선조사 설계 및 수행, 현장 조사 결과의 지표 반영 등 실질적인 성과측정 체계 구축 업무에 대한 실무를 수행하고 있음.
- 특히 향후 3년간 추진 예정인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사전·사후 비교를 위한 기초선 데이터 확보 및 평가체계 설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현지 참여가 필요함.
- **(역할 및 관련 전문성)** 본 출장에서는 전담조직 인력을 대상으로 한 사전 역량평가 시험 및 심층 인터뷰를 직접 수행하여, 향후 역량강화 프로그램 효과 측정을 위한 기초선 데이터를 확보할 예정임. 이를 바탕으로 기초선조사 문항을 구성하고,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구조를 설계에 참여하여 성과 측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대상 댐 현장 조사 결과를 성과관리 지표와 연계하여 평가체계를 보완하고, 출장 결과를 반영한 성과관리 체계 고도화 작업 실무를 진행할 예정임.

※ 외부전문가 출장 필요성 및 역할

□ 박정현 국토안전관리원 인재교육원 전임교수

- (필요성) ‘라오스 댐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2024-2028)’은 라오스 정부의 수자원 관리 역량 강화 및 재난 대응 체계 고도화를 목표로 추진되는 ODA 사업으로, 주요 활동 요소로는 ▲ 댐 안전관리 법령 및 운영 매뉴얼 수립, ▲ 대상 댐 정밀 안전진단, ▲ 모니터링 센터 및 시스템 구축, ▲ 안전 전담조직 역량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음.
- 본 사업은 단순 시설 진단을 넘어 ‘제도 구축-기술 적용-인력 양성-성과관리 체계 설계’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구조로, ▲ 댐 구조 안전성, ▲ 정밀안전진단 기법, ▲ 유지관리 체계, ▲ 교육훈련 체계 설계 등 전반에 걸쳐 고도의 시설물 안전관리 및 교육체계 설계 전문성이 요구됨.
- 특히 기초선 조사 단계에서는 대상 댐의 구조적 특성, 기존 관리체계 수준, 현지 기술 인력의 역량 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과관리 지표의 기술적 타당성 및 교육과정 설계 기준을 도출해야 하는바, 단순 엔지니어링 관점이 아닌 ‘법·제도-기술-교육훈련 체계’를 함께 이해하는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임.
- 이에 따라 시설물안전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기반 교육과정 개발 경험을 보유한 국토안전관리원 인재교육원 전임교수의 현지 참여를 통해, 라오스 여건에 적합한 안전관리 체계 및 교육훈련 구조 설계의 현실성·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 (역할 및 관련 전문성) 박정현 교수는 국토안전관리원 인재교육원 전임교수(2022.03.~현재)로서, 시설물 안전법·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교육과정 개발 및 강의를 담당하고 있으며, 시설물 안전관리 교육체계 개편 및 중장기 교육훈련 계획 수립 연구를 수행한 국내 시설물 안전 교육체계 설계 분야 핵심 전문가임.
- 또한 (주)한림구조엔지니어링에서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조사 및 평가 실무(2021.11~2022.2)를 수행한 바 있으며, 동아보건대학교 건축토목계열 교수로 20년 이상(1999~2021) 구조·토목 분야 교육 및 인력 양성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
- 주요 연구 및 활동으로는 ▲ 국토안전교육원 교육훈련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시설물안전법 교육과정 개편), ▲ 시설물안전법 교육훈련제도 개선 연구, ▲ 기술자 교육훈련 교육과정 개편 연구 등이 있으며, 이는 본 사업의 ▲ 전담조직 역량강화, ▲ 교육훈련 체계 설계, ▲ 성과관리 지표 연계 구조 구축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전문 영역임.

- 본 출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예정임.
 - i) 대상 댐 구조적 특성 및 안전관리 체계 진단: 정밀안전진단 대상 댐의 구조적 특성, 기존 점검·관리 방식의 적정성, 현지 기술 수준을 종합적으로 검토
 - ii) 현지 안전관리교육체계 분석 및 개선 방향 자문: 라오스 관개국(DOI) 및 전담조직의 운영 구조를 분석하고, 향후 교육훈련 체계 설계 방향에 대한 전문 자문 제공
 - iii) 역량 기초선조사 설계 자문 및 평가체계 고도화 지원: 전담 인력 대상 역량 기초선조사 문항 구성, 평가 기준 설정, 성과지표 설계의 기술적 타당성 검증
- 이를 통해 본 사업의 성과관리 체계가 형식적 지표 설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교육·운영·제도 개선으로 연결되는 구조로 설계될 수 있도록 기술적·교육적 관점에서 핵심 자문 역할을 수행할 계획임.

성명	출장 담당 업무 세부 내용	역할 관련 이력
박정현	- 대상 댐 구조 및 안전관리 실태 기술 점검 - 전담조직 인력 역량 진단 - 역량 기초선조사 및 성과지표 설계 기술 자문	- 시설물안전법·건설기술진흥법 교육과정 개발·강의 -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조사·평가 실무 경험 보유 - 시설물 안전 교육훈련 제도 개선 및 교육과정 개편 연구 수행

성명	역할 관련 이력
문상권	(현 직위) 국토안전관리원 인재교육원 전임교수(2022.03.-현재) (주요 경력) • (주)한림구조엔지니어링(2021.11.-2022.02.) • 동아보건대학교 교수(1999.03.-2021.02.) (관련 사업 및 연구수행 경력) • 국토안전교육원 교육훈련 중장기 계획수립 연구(시설물안전법 교육과정 개편안)/ 국토안전관리원 • 시설물안전법 교육훈련제도 개선 연구 / 국토안전관리원 • 기술자 교육훈련 교육과정 개편 연구 • 시설물안전법, 건설기술진흥법 교육과정 개발 및 강의 • (주)한림구조엔지니어링 -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조사 및 평가 • 동아보건대학교 건축토목계열 강의

4. 예산

○ 소요경비: \$7,706 + 1,212,000원 (항공료(2등 정액) 및 수수료 등 별도)

- 체재비(\$2,226)+현지이동경비(\$1,500)+회의비(\$440)+전문가활용비(\$2,540)+통역비(\$1,000)+사례품비(600,000원)+공항교통비(462,000원)+수용비(150,000원)

가. 체재비: \$2,226 (일비·식비 전도금, 숙박비 실비정산)

구 분	여 비 등 급	산 정 내 역	합 계	비 고 (전도금 합계)
이윤정 (부연구위원)			\$843	357
	일 비 ¹⁾	소 계	\$135	전도금
		(\$30×7일)-(\$30×5일×½) = \$135	\$135	
	식 비 ²⁾	소 계	\$222	전도금
		라등급 (\$37×7일)-\$37(3식) = \$222	\$222	
	숙박비 ³⁾ (실비정산)	소 계	\$486	실비정산
		라등급 \$81×6박 = \$486	\$486	
김로아 (위촉연구원)			\$759	297
	일 비 ¹⁾	소 계	\$117	전도금
		(\$26×7일)-(\$26×5일×½) = \$117	\$117	
	식 비 ²⁾	소 계	\$180	전도금
		라등급 (\$30×7일)-\$30(3식) = \$180	\$180	
	숙박비 ³⁾ (실비정산)	소 계	\$462	실비정산
		라등급 \$77×6박 = \$462	\$462	
박정현 ³⁾ (교수)			\$624	284
	일 비 ¹⁾	소 계	\$105	전도금
		(\$35×4일)-(\$35×2일×½) = \$105	\$105	
	식 비 ²⁾	소 계	\$179	전도금
		라등급 (\$49×4일)-\$17(1식) = \$179	\$179	
	숙박비 ³⁾ (실비정산)	소 계	\$340	실비정산
		라등급 \$85×3박 = \$340	\$340	

1) 현지이동경비 사용 예정일(5일)에 대한 일비 50% 차감

2) 현지 회의비 사용 3회에 따른 식비 3식 차감

3) 박정현 외부전문가는 해당 분야 경력 25년 이상으로 '연구위원' 여비 지급 기준으로 산정,
박정현 외부전문가는 일정상 3월 18일 출국 예정(TW131편)

나. 현지이동경비: \$1,500 (전도금/추후정산)

1) $\$300 \times 5\text{일} = \$1,500$

※ 기관 방문, 5일간 사업대상지 왕복(편도 6~8시간 거리) 등 이동에 따른 차량렌트비, 유류비 등

다. 회의비: \$440 (전도금/추후정산)

- 3/16(월): 농림부 산하 관개국(MAF, DOI) Mr. Vongsana 국장 외 7인 면담, 농어촌 공사 신임 라오스 사무소장, 우리 측 2인 포함 총 10인

→ $\$22 \times 10\text{인} = \220

- 3/18(수): 농어촌공사 라오스 사무소 김명원 소장, PMC 홍익기술단 한종수 단장, 기초선조사 업체 대표 등 우리 측 2인 포함 총 5인

→ $\$22 \times 5\text{인} = \110

- 3/20(금): 농어촌공사 라오스 사무소 김명원 소장, PMC 홍익기술단 한종수 단장, 우리 측 3인 포함 총 5인

→ $\$22 \times 5\text{인} = \110

※ 경비 정산 시 회의 참석자와 논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 결과 첨부 예정

라. 전문가 활용비: \$2,540 (전도금/추후정산)

- 농림부 산하 관개국(MAF, DOI) 內 역량강화교육 대상자 10인 수당 지급

→ $\$15 \times 10\text{인} \times 2\text{일} = \300

※ 농림부 산하 관개국(MAF, DOI) 소속 역량강화교육 대상자 10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선조사(사전 역량평가) 수행에 따라, 조사 참여를 위한 일비·식비·교통비 지급 필요

- 농림부 산하 관개국(MAF, DOI) 內 중회의실 2개소 임차료 지급

→ $\$60 \times 2\text{개} \times 2\text{일} = \240

※ 전담조직 인력 대상 사전 역량평가 시험 및 인터뷰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농림부 산하 관개국(MAF, DOI) 소속 중회의실 2개소를 2일간 임차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임차료 지급 필요

- 농림부 산하 관개국(MAF, DOI) 4인 출장 동행(사업대상 댐 2개소) 수당 지급

→ $\$250 \times 4\text{인} \times 2\text{일} = \$2,000$

※ 사업 대상 댐(Nam Chim 댐, Nam Phouk 댐) 관개국 및 지방정부 담당자 4인이 출장에 동행하여 금년도 사업 대상 댐 2개소를 안내할 예정으로, 이에 대한 교통비 및 출장비(일비 및 식비) 지급 필요

마. 통역비: \$1,000 (전도금/추후정산)

- 한국어(출발어)-라오어(도착어) 통역사 섭외 $\$200 \times 5\text{일} = \$1,000$

바. 사례품비: 600,000원 (실비정산)

- $30,000\text{원} \times 20\text{명} = 600,000\text{원}$

※ 사례품 관련 구입과 지급 내역, 전달 대상을 명확히 기재하여 정산 예정

사. 공항교통비: 462,000원 (실비정산)

- $[170,200\text{원} \times 2\text{명}] + [121,600\text{원} \times 1\text{명}] = 462,000\text{원}$

※ 외부전문가 공항교통비 원내 기준금액 적용 후 정산처리

아. 수용비 및 수수료: 150,000원 (실비정산)

- 현지 통신비(면담 기관과의 업무 연락과 현지 비상 연락을 위한 데이터 로밍비)
: $50,000\text{원} \times 3\text{인} = 150,000\text{원}$

5. 지변과목: 2025 국제농업협력(ODA) 성과관리 - 각 비목

가. 과제성격: 정책과제

나. 발주처: 한국농어촌공사

다. 과제 수행 기간: 2025. 1. 20. ~ 2026. 5. 31.

라. 연구진: 차원규(연구책임), 김상현, 이윤정, 주영선, 류민, 김로아, 이효정, 정승관, 김동현, 이화니, 연구희

마. 예산: 611,632,000원

목	세목	예산액	산출내역
	직접경비	566,691,000	
	외부인건비	242,600,000	○ 외부인건비: 242,600,000원 - 연구원: 5,400,000원×10개월×100%×1인 = 54,000,000원 - 연구보조원: 4,100,000원×10개월×100%×3인 = 123,000,000원 - 연구보조원: 4,100,000원×8개월×100%×2인 = 65,600,000원
	국내여비	9,475,000	○ 국내여비(서울기준): 9,475,000원 - 책임연구원: 200,000원×1인×5회=1,000,000원 - 연구원: 200,000원×1인×10회=2,000,000원 - 연구원: 185,000원×3인×5회=6,475,000원
	국외여비	96,876,000	○ 국외여비(다등급 국가기준): 96,876,000원 - 책임연구원: 3,764,000×1인×3회=11,292,000원 - 연구원: 3,764,000×1인×3회=11,292,000원 - 연구보조원: 3,000,000×3인×3회= 63,000,000원 - 현지교통비, 외부전문가 출장지원 등 기타비용: 11,292,000원
	수용비 및 수수료	160,240,000	○ 수용비 및 수수료: 160,240,000원 - 인쇄비 및 유인비: 4,000,000원 * 보고서 유인비: 5,000원×6종×100부 = 3,000,000원 * 세미나 자료 인쇄비: 10,000원×10종×10부 = 1,000,000원 - 기초선 조사 수행지원비: 86,000,000원 * 기초선조사 전문기관 조사위탁: 14,000,000원×6건 = 84,000,000원 * 기초선조사 관련 전문가 자문: 2,000,000원×1건=2,000,000원 - 전문가 활용비: 60,900,000원 * 전문가 원고위탁 및 자문: 10,150,000원×6건 = 60,900,000원 - 통역 및 번역 전문가 활용비: 5,040,000원 * 현지통역비: 500,000원×6건 = 3,000,000원 * 번역비: 1,020,000원×2건 = 2,040,000원 - 성과지표 데이터베이스 운영수수료: 1,000,000원 * DB 운영수수료: 1,000,000원×1건 = 1,000,000원 - 사무용품 구입비: 1,000,000원 - 워크샵 준비비(물품 구입 등): 2,300,000원
	협동위탁 연구비	50,000,000	○ 협동위탁연구비: 50,000,000원 - 국가별 성과지표 데이터베이스 구축 비용: 50,000,000원×1회=50,000,000원
	회의비	6,000,000	○ 회의비: 6,000,000원

목	세목	예산액	산출내역
			- 전문가 자문회의: 3,000,000원 * 식대: 30,000×5회×15인=2,250,000원 * 다과: 10,000×5회×15인=750,000원 - 전문가 자문수당: 3,000,000원 * 전문가 자문수당: 200,000원×5인×3회 = 3,000,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1,500,000	○ 공공요금 및 제세: 1,500,000원 - 우편요금: 100,000원×10개월 = 1,000,000원 - 전화요금: 50,000원×10개월 = 500,000원
	개발보전비	44,941,000	○ 개발보전비: 44,941,000원 - 내부인건비: 42,823,776원 - 일반관리비: 2,117,224원
합	계	611,632,000	

6. 출장 일정(안)

No	일 자	방문 기관	수행 업무	참석자
1	3.15 (일)	○ 인천(ICN)→비엔티엔(VTE)	• 인천(20:05)→비엔티엔(00:05) TW131	이윤정 김로아
2	3.16 (월)	○ KRC 라오스 사무소 면담	• 농어촌공사(KRC) 라오스 사무소장 면담 • 성과관리 체계 고도화 방향 및 향후 협력 구조 논의	이윤정 김로아
		○ 농림부 관개국(MAF, DOI)	• 전담조직 역량강화교육 대상자 현황 확인 및 기초선조사 협조 요청 • 성과관리 관련 협력 구조 논의	이윤정 김로아
3	3.17 (화)	○ Nam Chim 댐 *사업대상 댐 8개소 중 하나로 비엔티엔주 폰흥에 위치	• 댐 현장 조사 및 운영·관리 실태, 모니터링 환경 확인 • 성과관리 지표의 현장 적합성 검증 및 기초자료 수집	이윤정 김로아
4	3.18 (수)	○ Nam Phouk 댐 *사업대상 댐 8개소 중 하나로 비엔티엔주 므앙쌍통에 위치	• 댐 현장 조사 및 운영·관리 실태, 모니터링 환경 확인 • 성과관리 지표의 현장 적합성 검증 및 기초자료 수집	이윤정 김로아
		○ 인천(ICN)→비엔티엔(VTE) (박정현 교수)	• 인천(20:05)→비엔티엔(00:05) TW131	박정현
5	3.19 (목)	○ 농림부 관개국(MAF, DOI) 전담조직 역량강화교육 대상자	• 정밀안전진단 및 모니터링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전 역량평가 시험 실시 - 전담조직 인력 대상 역량 수준에 대한 기초선(Baseline) 정량 데이터 확보 • 1차 점수 채점 결과를 토대로 익일 실시 예정인 정성평가(인터뷰)의 수준 및 범위에 대해 검토 • 사전·사후 역량평가 체계 적용을 위한 평가 문항 및 측정 구조 논의	이윤정 김로아 박정현
6	3.20 (금)	○ 농림부 관개국(MAF, DOI) 전담조직 역량강화교육 대상자	• 정밀안전진단 및 모니터링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실시 - 전담조직 인력 대상 역량 수준에 대한 기초선(Baseline) 정성 데이터 확보 • 인터뷰 결과를 기반으로 한 역량 평가체계보완 및 적용 가능성 논의	이윤정 김로아 박정현
7	3.21 (토)	○ PMC 홍익기술단 면담	• 기초선조사 보완을 위한 추가 조사 수행 및 조사 결과 자료 정리 • PMC 및 전문가 교수 면담을 통한 조사 결과 검토 및 성과관리 설계 보완	이윤정 김로아 박정현
8	3.22 (일)	○ 비엔티엔(VTE)→인천(ICN)	• 비엔티엔(01:05)→인천(07:35) TW132	이윤정 김로아 박정현

※ 세부 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여 비 규 정

제 3 장 국외출장 여비

제16조(지급기준) ①국외여비는 별표 2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되, 숙박비의 경우 직급별 해당 금액 한도내에서 법인카드에 의한 실비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숙박비 정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출장여간상 실비보다는 할인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되는 경우 할인정액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83.1.1, 1985.2.1, 1988.12.27, 1992.11.1, 1994.12.29, 1995.1.24, 1996.6.26, 1988.4.30, 1999.9.18, 2000.6.30, 2001.4.1, 2005.12.23, 2009.12.30, 2010.6.29, 2010.10.28, 2010.12.31, 2012.5.23, 2012.12.31, 2013.4.10, 2014.4.20, 2015.3.25, 2015.5.20, 2016.3.23, 2017.8.31, 2019.12.12).

②초청자 부담으로 국외출장할 때에는 연구원에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다만, 초청자가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별표 2호의 국외여비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2.30, 2013.9.17, 2019.12.12).

③출장자에게 특수지역 또는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여비의 정액을 달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그 여비를 정산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0.6.29).

④원장은 특별한 임무 또는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장자에게 업무추진비 또는 자료수집비를 정산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0.6.29).

⑤숙박비는 직급별 상한액 한도 내에서 법인카드에 의한 실비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국가 또는 숙박업소의 경우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다(신설 2013.4.10).

⑥숙박비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국외 숙박비를 실비 상한액으로 정산하지 않고 할인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을 초과하여 숙박비를 지출한 때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5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숙박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3.4.10).

제17조(준비금) 외국에서 부임하거나 국외 출장시 다음 항목에 한하여 준비금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항교통비는 나주와 공항 구간의 국내여비운임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3.4.10, 개정 2015.8.13, 2019.12.12).

1. 비자발급비(비자면제프로그램의 경우 관련 수수료 포함)
2. 예방접종비
3. 여행자 보험 가입비
4.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5. 상기 목적물을 실현하기 위해 수반되는 부대경비(비자발급 대행수수료 등)
6. 공항이용료 및 공항교통비(운임)

제18조(체재비 및 지역 이동경비) ①체재비는 일비(출장지역 시내 교통비), 식비 및 숙박비로 구분하고 일비,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숙박비는 숙박일수에 따라 각각 지급한다. 다만 동일지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체재비는 그곳에 도착한 날부터 기산하여 그 일수가 15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한 정액의 2할, 6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한 정액의 3할에 상당한 액을 감급하며, 출장중 회의 개최시 회의비에 출장자 식비가 포함된 경우, 해당 식대는 체재비에서 차감하여 지급한다(개정 1998.4.30, 2001.4.1, 2006.3.30, 2012.12.31).

②지역 이동경비는 시외 지역간 거마비로 출장자는 지역간 이동경로 등 세부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비를 정산한다. 단, 출장지역이 일반 대중교통 지역이면서 업무 효율상 차량 렌트 등 개별 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하며, 구간 거리에 대한 대중교통 환산금액을 초과하여 정산할 수 없다(신설 2006.3.30, 개정 2013.9.17).

제19조(장기체재자에 대한 체재비 지급) 장기체재자의 체재비는 2개월에 1회씩 그 소요액을 송금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부대비) 삭제(2013.4.10.)

국 외 여 비 정 액 표

〈라등급 기준〉

단위: US\$

구 분	항공임	일 비	식 비	숙박비		비 고
				실비정산	할인정액	
기 관 장	중간 등급	50	73	실비 (161)	137	
부 원 장	중간 등급	40	61	실비 (108)	92	
선임연구위원으로 최 상 위 부 서 장	중간 등급	35	49	실비 (85)	72	
최 상 위 부 서 장 선 임 연 구 위 원 연 구 위 원 책 임 행 정 원 책 임 전 문 원	2등 정액					
부 연 구 위 원 선 임 행 정 원 선 임 전 문 원	2등 정액	30	37	실비 (81)	69	
전 문 연 구 원 연 구 원 행 정 원 전 문 원 책 임 사 무 원 책 임 관 리 원 선 임 사 무 원 선 임 관 리 원 사 무 원 관 리 원	2등 정액	26	30	실비 (77)	65	

〈국가별, 지역별 등급 기준〉

구 분	지 역
가등급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타이완, 베이징,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쿡제도 2) 남·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3)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사이프러스,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아프리카주: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수단, 남수단,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에티오피아,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키르기즈공화국, 타이, 터키,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니우에 2) 남·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3) 유럽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4) 중동·아프리카주: 가나,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 미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통가 2) 남·북아메리카주: 과테말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마케도니아,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벨라루스,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4) 중동·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해외출장 효율화를 위한 업무지침

제정 1997. 3. 25 개정 1997. 4. 22
개정 1999. 1. 26 개정 2001. 9. 29
개정 2009. 7. 13 개정 2010. 11. 2
개정 2012. 5. 23 개정 2012. 12. 31
개정 2018. 11. 21 개정 2019. 7. 30
개정 2020. 4. 6

제1조(목적) ①이 지침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해외출장 효율화와 출장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삭제 2012.12.31).

③(삭제 2012.5.23).

제2조(해외출장의 정의) ①초청자 부담 해외출장이라 함은 정부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단체, 기업체 등의 초청기관이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부담하여 연구자가 초청기관과 동행하는 해외 출장을 말한다(신설 2012.12.31).

②출장경비는 초청기관이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2.12.31.).

③외부지원 해외출장이라 함은 외부기관 직원 등의 여비를 지급하는 해외출장을 말한다. 다만, 외부기관 직원 중에서 연구원 연구자문위원, 협동연구기관 연구참여자 등은 제외한다(신설 2018.11.21).

제3조(초청자 부담 해외출장의 제한) 원장은 이해관계가 있는 유관기관, 단체, 기업체 등의 초청자 부담 해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정부부처, 지자체 등으로부터 전문가의 자격으로 출장동행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12. 12.31).

제4조(출장대행사 선정) 동일 목적의 출장인원이 1회 5명 이상이고 출장의 기획 및 주관 대행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 복수의 대행사로부터 경쟁입찰 방식으로 행해야 한다. 다만, 단순히 항공관련 대행이나 해외출장심사위원회에서 시급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2.12.31).

제5조(해외출장심사위원회 구성) ①해외출장 관련 업무, 해외출장계획 수립과 조정등을 위하여 해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9.7.13).

②위원회는 위원장(기획조정실장) 1인과 5명 이내의 원내 심사위원(감사실장을 당연직으로 구성) 및 간사 1인으로 구성하며, 외부지원 해외출장 등 필요한 경우에는 3인 이내의 외부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1999.1.26, 2009.7.13, 2018.11.21).

제6조(위원회 업무) 위원회는 출장의 필요성 및 목적, 기간, 인원, 비용, 준비사항, 방문기관의 타당성, 금후 활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정안건의 보류, 수정, 새로운 임무 부여, 지침시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09.7.13, 2012.12.31).

제7조(해외출장계획 심의 및 결재) ①해외출장 대상자는 출장계획을 수립하여 부서장에 보고한 후, 위원회의 심사를 연구관리부서에 요청한다(개정 2001.9.29, 2009.7.13, 2012.12.31).

②연구과제 관련 해외출장은 위원회 개최를 통해 심사한다. 단, 효율적이고 신속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이때 초청자부담 해외출장과 외부지원 해외출장의 경우 불가피한 사정을 제외하고 서면심사를 할 수 없다(개정 2012.12.31, 2018.11.21, 2019.7.30).

③정부부처, 지자체 이외의 유관기관, 단체, 기업체 등의 초청자 부담 해외출장은 위원회의 개최를 통해 심사한다(신설 2012.12.31).

④정부부처, 지자체 등의 초청자 부담 해외 출장은 사전에 서면으로 초청기관으로부터 공문서를 받아야 하며, 초청자가 경비 전액을 부담하고 원장의 승인을 득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12.12.31).

⑤학술행사 참여를 위한 해외출장은 출장자가 학술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부실학술단체 여부를 사전점검하고, 위원회에서 2차 점검을 실시한다(신설 2020.4.6).

⑥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 해외출장 대상자가 본인인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하며, 심사건과 연관있는 위원도 심의의결에서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12.12.31, 개정 2020.4.6).

⑦연구관리부서는 위원회 심사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해당 부서에 통보한다(신설 2009.7.13, 개정 2012.12.31, 2020.4.6).

⑧심사 요청자는 해외출장계획서와 심의결과를 첨부하여 출장결재를 받도록 한다(신설 2009.7.13, 개정 2020.4.6).

제8조(해외출장계획 심의) 삭제(2009.7.13)

제9조(해외출장결과보고서 제출) ①출장자는 출장 종료후 30일 이내에 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장(또는 위임전결자)에게 복명하고, 결과보고서를 연구원 홈페이지 등의 해외출장 정보에 출장계획서와 함께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1999.1.26, 2001.9.29, 2012.12.31, 2018.11.21).

②연구관리부서장은 출장결과 보고서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직원들의 출장시 참고토록 한다. 다만, 출장결과에 대한 내용이 보안상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고 별도로 관리한다(개정 1999.1.26, 2001.9.29, 2009.7.13).

제10조(출장결과의 활용) 원장은 출장결과보고서의 내용을 널리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교육, 홍보, 세미나 개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